

인천지방법원 2024. 9. 27 선고 2023가단26014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

담당변호사 김민섭

피 고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, 남지혜

변 론 종 결 2024. 7. 19.

판 결 선 고 2024. 9. 27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E, F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 중 각 3/7 및 2/7 지분에 관하여 2022. 11. 1. 체결된 각

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피고는, E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 중 3/7 지분에 관하여, F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 각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3. 5. 26. 접수 제187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의 E, F에 대한 판결금 채권

- 1) G은 E, F, H를 상대로 대여금청구(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3057)를 제기하여 2015. 5. 21. ‘위 3인은 연대하여 G에게 1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3. 19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- 2) G은 2020. 11. 18. 사망하였고, 원고들이 위 판결금 채권을 각 1/3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.

나. E, F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

- 1) E의 남편이자, F, 피고, I의 아버지인 J는 별지 표시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을 소유하다가 1997. 6.경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는데, K 주식회사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(서울지방법원 98가합67787호)의 확정 승소판결에 따라 2001. 1. 29. 위 이전등기는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는 J로 복귀하였다.
- 2) J(이하 망인이라 한다)는 2022. 11. 13. 사망하였고, E, F, 피고, I이 그를 상속하였다1) .
- 3) 피고는 2023. 5. 2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11. 13. 협의분할(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)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E, F의 재산상태

E, F은 이 사건 협의일인 2022. 11. 13. 당시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,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들의 주장

채무초과상태에 있던 E, F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에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. 피고의 다툼

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이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바 있고, 그 이후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왔다.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E, F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고, 그에 따라 피고의 단독 명의로 이전한 것이다. 피고는 협의 과정에서 E, F으로부터 채무초과사실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,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.

다. 판단

1) 관련 법리

가)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,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)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

참조).

나)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,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, 무자력의 정도,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,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,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.

그리고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(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7다2718 판결,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다52416 판결,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).

다)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,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,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,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.

2) 구체적 판단

가)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와 처 L는 망인과 E에게 생활비 등으로 많은 돈을 보내드렸고, 그 대가로 1997. 6.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점, ② 앞서 본 사해행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다시 망인으로 복귀되었으나,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, 가압류, 가처분과 관련된 채무 약 6,000만원 정도를 피고가 대신 모두 변제하여 관련 등기가 모두 말소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위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점,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보증금과 월차임을 직접

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점, ④ 나아가 피고는 장기간 망인과 E를 보살피면서 병원비, 생활비 등으로 약 5,500만원을 부담하는 등 이들을 부양하여 온 점, ⑤ 이러한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 E, F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라고 인식하였던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함과 동시에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협의를 하였던 것인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협의 당시 채무자인 E, F에게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, 이 사건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)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(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,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피고로서는 E, F의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할 것을 알고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).

3. 결 론

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판사 김성대

별지

1) E와 F의 상속지분은 각 3/9과 2/9로 위 청구취지의 기재는 잘못된 것이나,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므로 따로 정정시키지 않았다.